

※ 별첨

■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	○		특별공급신청서/무주택서약서/ 개인정보활용동의서		접수 장소에 비치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확인서	본인	용도: 주택공급신청용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신분확인 가능한 신분증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요망)
일반 특별공급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
	○		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 (국가유공자, 장애인제외)	본인	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임) 내역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(가임)확인서발급
	○		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	본인	장애인특별공급의 경우 해당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(복지카드등 기타서류로 청약신청불가),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영단으로 접수함.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(2017.12.22.)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
다자녀 특별공급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○		주민등록표등본	자녀	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(이혼/재혼한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.)
	○		가족관계증명서	자녀	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신청한 자에 한함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청약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
	○	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입양의 경우
	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접수장소에 비치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 제출
	○		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	
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인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비사업자확인각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(공급신청자) 및 인감도장(공급신청자) 신분증(공급신청자) 대리인인장, 신분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피부양직계존속 피부양직계존속 본인 본인 본인 자녀 본인 (또는 배우자) 본인 (또는 배우자) 본인 (또는 배우자) 본인 (또는 배우자) 본인 및 세대원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본인 및 세대원 본인 대리인 	<p>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함)</p> <p>주인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(2017.12.22.)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출생관련 일자확인 필요 시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며, 소득이 있는 본인 및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전원의 재직증명서 제출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등)제출 [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17.12.22.)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.] 임양의 경우 접수장소에 비치 접수장소에 비치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 - 건강(의료)보험종이 입주자모집공고일(2017.12.22.)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(의료)보험증제출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(2017.12.22.)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명서류 - (표1참조)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증명서류 대리신청시(본인 외 모두 3자로 간주함.)- 위임장은 접수장소에 비치 외국인 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시는 제출 생략 인감증명서용도: 주택공급신청위임용. 단, 외국인의 경우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,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								
				신혼부부 특별공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비사업자확인각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(공급신청자) 및 인감도장(공급신청자) 신분증(공급신청자) 대리인인장, 신분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 (또는 배우자) 본인 (또는 배우자) 본인 (또는 배우자) 본인 (또는 배우자) 본인 및 세대원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본인 및 세대원 본인 대리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양의 경우 접수장소에 비치 접수장소에 비치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 - 건강(의료)보험종이 입주자모집공고일(2017.12.22.)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(의료)보험증제출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(2017.12.22.)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명서류 - (표1참조)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증명서류 대리신청시(본인 외 모두 3자로 간주함.)- 위임장은 접수장소에 비치 외국인 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시는 제출 생략 인감증명서용도: 주택공급신청위임용. 단, 외국인의 경우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,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				
								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신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비사업자확인각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(공급신청자) 및 인감도장(공급신청자) 신분증(공급신청자) 대리인인장, 신분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 (또는 배우자) 본인 (또는 배우자) 본인 (또는 배우자) 본인 (또는 배우자) 본인 및 세대원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본인 및 세대원 본인 대리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등)제출 [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17.12.22.)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.] 임양의 경우 접수장소에 비치 접수장소에 비치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 - 건강(의료)보험종이 입주자모집공고일(2017.12.22.)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(의료)보험증제출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(2017.12.22.)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명서류 - (표1참조)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증명서류 대리신청시(본인 외 모두 3자로 간주함.)- 위임장은 접수장소에 비치 외국인 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시는 제출 생략 인감증명서용도: 주택공급신청위임용. 단, 외국인의 경우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,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

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17.12.22.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함.(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